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0월 20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0월 7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10월 2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 시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아동 옴부즈퍼슨의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제3호)
-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  
(안 제11조의2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) 및 신설(제6항, 제7항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 나. 검토의견

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 ombudsman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

### 2) 주요내용

- 아동 ombudsman의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제3호)  
아동 권리를 대변하는 ombudsman의 용어를 정의함
- 아동 ombudsman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(안 제11조의2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) 및 신설(제6항, 제7항)  
ombudsman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구성인원과 주요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

## 다. 검토의견

유엔아동권리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: CRC)은,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권, 발달권, 보호권,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(4대 권리)를 명시한 협약임. 이 협약은 1989. 11. 20.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, 2019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하였음.

### ○ (금천구)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진행 경과

- ▶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: 2017. 10. 13.
- ▶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: 2019. 1. 15.
- ▶ 아동친화도시 1차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완 : 2019. 3. 25.
- ▶ 아동친화도시 2차 대면심의 : 2019. 6. 19.
- ▶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료 : 2019. 7. 8.
- ▶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: 2019. 8. 22.

-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고,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구체적인 사항 중 아동 ombuds퍼슨의 실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